

사천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07. 8. 30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7. 8. 30(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61호)
- 다. 상 정 : 2007. 9. 17(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수도사업소장 : 장석기)

가. 제안사유

- 수도법(법률 제8370호, 07. 04. 11)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정비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(「 」)표시
-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 개정(안 제2조제1항, 안 제2조제2항)
- 조례 내용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모두 변경
- 시설보수 등을 위한 급수 중단 조치 시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릴 관리자의 의무조항 신설(안 제8조제2항)
- 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교육실시
 - 정기적인 청소(안 제18조제1호)
 -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(안 제18조제5호)
 - 정기교육은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⇒ 분기1회 이상(안 제20조)

○ 관리의 위탁변경

-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위탁 ⇒ 민간위탁(안 제21조)

○ 서식명칭 변경(안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)

- 간이급수시설 ⇒ 소규모 수도시설

○ 안내판 내용문 수정(안 별표)

- 간이상수도 ⇒ 마을상수도
- 사천시 수도과 ⇒ 사천시 수도사업소

다. 관계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조, 제17조, 제47조, 제5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영옥)

- 본 안건은 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,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내용으로

-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(「」)표시
-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,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, 용어를 개정하였고,
- 관리자 의무사항 신설하여 급수 중단 조치시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,
- 협의회 기능 확대 및 교육실시를 통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시설운영,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,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안건도 입법예고시 자치법규명이 의회에 제출된 「사천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으로 예고하여 형식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으나
- 입법예고시 개정이유,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예고하여 내용적으로는 하자

없는 것으로 사료되며

- 수도사업소장은 입법예고문 작성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합의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
- 본 안건은 입법예고시 형식적으로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